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습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2020.0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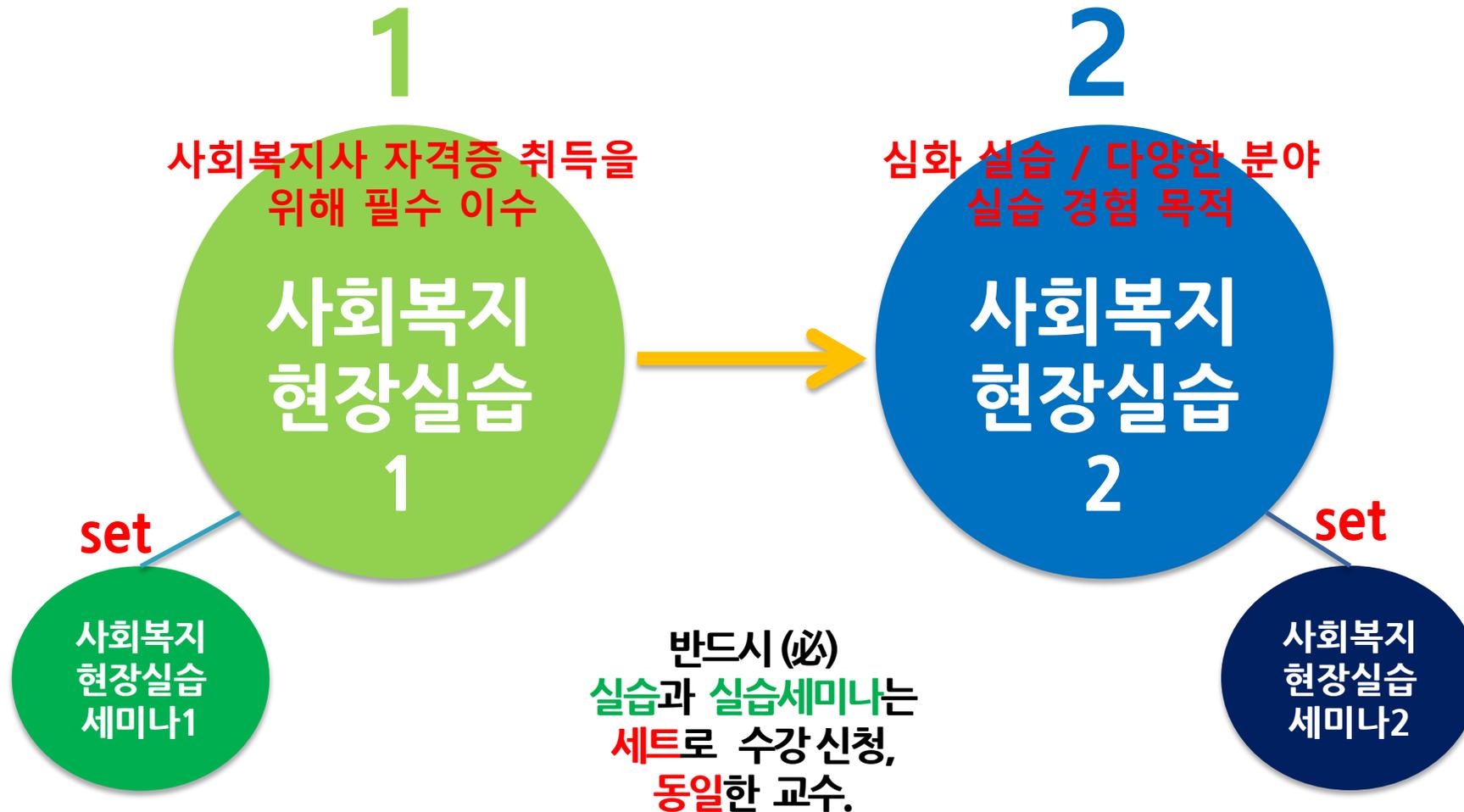


1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유형과 목적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유형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유형

반드시(必) 실습과 실습세미나는
세트로 수강 신청

사회복지현장실습1 vs 사회복지현장실습2

	3학년	4학년
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1 [3학점]	사회복지현장실습2 [3학점]
세미나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1 [2학점]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2 [1학점]
실습 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 실무경험 2)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 실무경험 3) 기관 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추천기관 리스트 확인 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문 참조**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수행 연습



Information

사회복지 실습1,2 & 세미나1,2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업무 이해

사회복지 실천 지식 및 기술의 활용 경험

진로 선택 및 취업 준비

실제 사회복지사가
업무에 임하는
마음가짐으로!

2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위한 조건



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3조 관련

1. 실습시기 및 이수시간

2. 실습기간 선정 시 고려사항

실습시기 및 이수시간

변경 전

- 최소 요건 : 주 40
시간 X 3주, 총 120
시간 이수
- 일반적으로 주 40
시간 X 4주, 총 160
시간 이수

변경 후

- 주 40시간 X 4주,
총 160 시간 이수

실습기관 선정 기준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2. 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3.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 상기 법에 포함되지 않는 실습기관에 대한 실습가능 여부 확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관 검색** 가능
- 홈페이지 :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실습기관 선정 기준



인천사회복지사업원
자격관리센터

[홈](#) | [로그인](#) | [회원가입](#) | [협회홈페이지 바로가기](#)

사회복지사자격증
증명서발급
열린광장
현장실습 등록&검색
마이페이지

[실습기관 및 지도자등록](#) | [등록기관 검색](#) | [실습생모집 게시판](#) | [실습 자료실](#)

아이디

비밀번호

ID기억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비밀번호찾기](#)



자격관리센터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 실습기관 및 지도자 등록
- 등록신청 방법
- 등록기관 검색
- 실습생모집 게시판
- 실습 자료실

▶ 등록기관 검색 홈 > 현장실습 등록&검색 > 등록기관 검색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따른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기준 요건 충족 시 실습지도 가능합니다.
- 실습 전 교육기관 및 실습지도교수와 충분한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분류선택

지역선택

실습운영방식선택

기관명

▣ 전체 : 9879

순번	기관명	기관분류	지역	소재지	실습운영방식
1	다송지역아동센터	아동	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	수시
2	제왕원소규모요양시설	노인	제주	제주 제주시 오라2동	주중실습(월~금)
3	(재)중앙입양원	기타	서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주중실습(월~금)
4	골나루재가노인복지센터	노인	충산	충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수시
5	경기여주지역자활센터	저소득	경기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수시

실습할 기관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의 활용



사이트	주소	방법
한국사회복지협의회	http://knsw.bokji.net	관련사이트> 협의회 운영> 사회복지포털 복지넷 (http://www.bokji.net)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http://www.twin.or.kr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검색 or 배너 중 '복지넷' 클릭하여 확인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http://www.gbcsw.or.kr	사회복지기관 현황> 사회복지시설·기관 검색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lic.welfare.net	취업정보> 현장실습> 현장실습 등록 & 검색

**** '기관 검색'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홈페이지 방문→게시판 확인**

실습지도가 가능한 자격

[슈퍼바이저의 자격]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업 실무경험
-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
업 실무경험
-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실습기관 선정 시 고려할 사항

- 실습지도 시스템
- 취업과의 연계
 - ✓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분야에서
임용기준에서 기관 실습을 전제로 하는지
 - ✓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전통, 우수 기관들
-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의
실습생 또는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여부

F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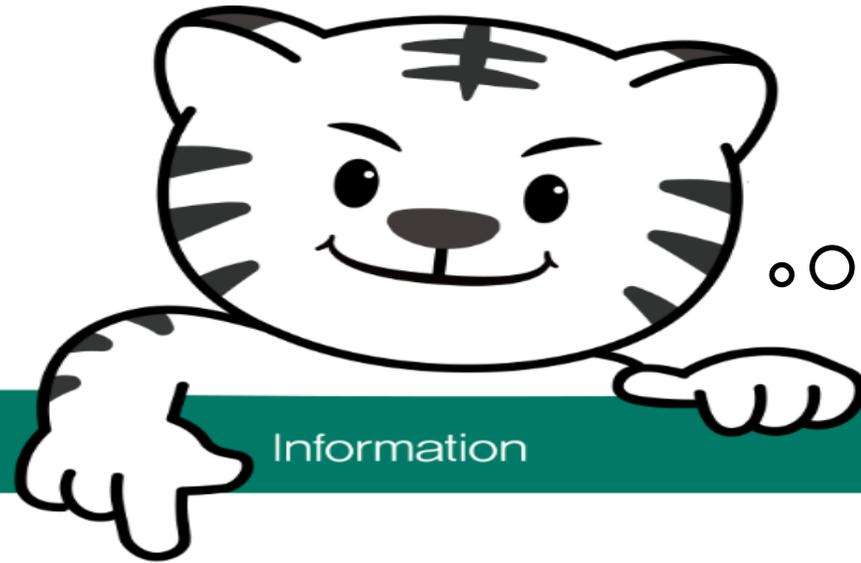
1. **사회복지현장실습1** 시기는 꼭 3학년 여름방학에만 해야 하나요? **NO!**

※ 2020년 1월~2월29일 겨울방학 실습(단, 실습인정 기관이어야 함) 외에 그 이전에 실습하고, 올해(2020년도) 2학기에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실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습을 다시 해야 함.

2. **사회복지현장실습1 & 세미나1, 사회복지실습2 & 세미나2**를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NO, 예외 가능**

사회복지현장실습 및 세미나 관련 문의 사항은



궁금하거나 상의할 내
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노크해 주세요~

Information

-방문상담: 사과대2호관 2208A 호

-전화 상담: 053)850-4578

-이메일: kschoi33@daegu.ac.kr

3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진행 절차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진행절차



4-5월	· 실습기관 결정 및 실습 신청
6월 중	· 실습 안내 및 기초 교육
7-8월	· 실습 실행
9-11월	· 실습세미나(슈퍼비전 평가) 2과목 모두 신청!!
11월 중	· 실습 보고회



현장실습 교육일정 안내

실습기관의 결정 및 실습 신청

- ✓ 실습지 선정 : 4-5월
- ✓ 실습신청 공문 발송 : 4-6월 중순까지
(*단, 기관 별 실습생 모집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실습기관 배치 전 준비교육

- ✓ 일정 : 6월 기말고사 이후, 실습 전 필수 이수
- ✓ 주요활동 내용 : 실습과정에 필요한 지식 검토

신청서 서식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http://dsw.daegu.ac.kr>) 에서
공지 사항 > 서식 자료실 > 실습 서식 총괄 > 실습신청서

※ 아래와 같은 실습신청서 다운 받아 공란(빈칸)없이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임상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실습신청자	성명		학년	
	학교/학과		학번	
	연락처		E-mail	
	주소			
실습기관	기관명		연락처	
	실습기간		FAX	
	기관주소			

현장실습 교육일정 안내

실습실시

- ✓ 실습활동 : 7-8월
- ✓ 주요활동 내용
 - ① 실습생들의 실습활동
 - ② 기관 및 학교의 슈퍼비전 실시
 - ③ 실습 상황 검토

현장실습 세미나 및 보고회

- ✓ 일정 : 9-11월 (실습 및 세미나 수업 진행)
- ✓ 실습 보고회 : 11월 (1회 / 4시간)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신청 안내

★8월 수강 신청 시,

• 2학기에 개설되는 두 과목 모두 신청(**동일한 교수님**으로 신청해야 됨)

✓ 사회복지현장**실습**

: 방학 중 실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받음.(실습평가서=성적)

✓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

: 실습내용을 토대로 토론 및 슈퍼비전, 평가(실제 이론수업 진행)

실습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실습확인서’ 발급 시,
실습지도교수란은 **비워두고** 발급.
- ‘실습 지도교수란’은
실습 시, 기관을 방문하신 교수님이 아니라
2학기에 현장 실습 및 세미나 과목 **수업을 진행하실 교수님**임.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전체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실습기관 결정 및 실습 신청									
				실습 안내 및 기초교육								
					실습 실행							
							실습 및 세미나 수업(슈퍼비전 평가)					
										실습 보고회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1) 1급 자격기준

◆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 7개)을 이수

(2020년부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에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등 7개 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4과목 12학점 이상에서 7과목 2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 됨)

◆ 총 51학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졸업자!)

◆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시험에 응시 후 합격

✓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1급 자격증이 부여됨.

1
사회복지사자격증

증명서발급

열린광장

현장실습 등록&검색

마이페이지

자격제도 | 등급별자격기준 | 이수과목안내 | 자격증신청방법 | 나의자격기준

 아이디
 비밀번호
 ID기억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비밀번호찾기

사회복지사자격증

> 자격제도

> 등급별자격기준

2
> 이수과목안내

> 자격증신청방법

> 나의 자격기준

이수과목안내

홈 > 사회복지사자격증 > 이수과목안

3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동일과목 심의안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 적용 :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구 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 · 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교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을 위한 공통 이수교과목 [2급, 1급]

2) **필수과목 10과목 30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을 위한 공통 이수교과목 [2급, 1급]

3) 선택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사례관리론	빈곤론	복지국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사례관리론, 중독과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해당하는 이수선택과목이 아님.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학년, 명칭)

학년

- 장애인복지론(3학년 2학기)
→ **2학년 1학기**
- 여성복지론 (4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 의료사회복지론 (4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 교정복지론 (4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2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
-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3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

명칭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역사**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가족치료 → **가족상담 및 치료**
-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임상사회복지실습 & 세미나 →
→ **사회복지실습2 & 세미나2**

사회복지학과 교과과정(변경 후)

전공공통프레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나눔과 헌신(사랑)			자원봉사론					
지역사회맞춤(빛)					사회복지 현장실습(1)		사회복지혁신 스타트업 사회복지 현장실습(2)	
자기주도(자유)	사회문제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세미나 캡스톤 디자인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가족상담 및 치료
		사회복지역사	가족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정책론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사회서비스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중독과 사회복지 실천	
			장애인복지론	사회보장론	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복지상담		
			빈곤론	사회복지영어	사례관리론			

*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목은 1,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이수 과목임*

사회복지현장실습(1)은 여름 실습학생이 듣는 과목이며 사회복지현장실습(2)는 겨울실습학생이 듣는 과목으로 두 과목중 한 과목만 이수하면 됨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 이수해야만 사회복지 자격증이 발급 가능함

전공학점 66학점, 복수전공은 42학점 이상, 부전공은 21학점 이상

사회복지학과 학사 명칭변경에 따른 재 수강 안내

교과목 명칭의 변경으로, 이번 학기(2020-1학기) 부터 교과목 변경되
기 전의 교과목은 **재수강이 불가능함.**

ex) '사회복지법제'(변경 전) 교과목을 이미 이수한 학생도 이번 학기에
개설 되는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변경 후) 교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있음.
즉, **전공 과목으로 두 과목 모두 이수 가능함.**

※ 단, 사회복지 법제(변경전) 교과목을 이미 들은 학생은
자격증과목으로 따졌을 때는 꼭 다시 듣지 않아도 됨.

사회복지학과 학사 안내

1. 사회복지학과 교과목 이수체계도에 나타나 있는 전공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타과**에서 이수하여도 사회복지학과 전공생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됨.
※ 단, 교과목명이 한 글자라도 틀릴 시 인정 안됨.
2. 사회복지학과를 **부, 복수** 전공하는 학생은 꼭 사회복지학과에 개설되는 교과목 만을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할 것. 동일한 교과목을 타과에서 이수하여도 전공학점으로 인정 안됨.

사회복지학과 학사 안내

	사회복지학과 학생	부·복수전공학생
타과 동일교과	전공학점으로 인정됨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전공필수 과목	반드시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됨	반드시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예시	<p>ex)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 및 평가]을 이수할 시, 전공학점으로 인정 안 됨. (교과목 명이 한 글자라도 틀릴 시 인정 안 됨)</p> <p>ex) 산업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사회복지실천론]을 이수할 시, 전공학점으로 인정됨.</p>	<p>ex)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사회복지실천론]을 이수할 시, 전공학점으로 3학점이 인정됨.</p> <p>ex) 산업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사회복지실천론]을 이수할 시, 전공학점으로 3학점이 인정되지 않음.</p>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전공선택
[사회복지실천론] : 전공필수

사회복지학과 학사 안내

3. 사회복지현장실습1(하계) or 2(동계),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1(하계) or 2(동계)
교과목 모두 세트로 이수할 것.

Ex) 사회복지현장실습1(김문근 교수님),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1(김문근 교수님)
-수강신청 시,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과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과목을
같은 교수님으로 신청해야 함. (기관 방문한 교수님 아님)

사회복지학과 학사 안내

4. 실습 성적 평가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실습내용(실습평가서 등)을 토대로 학점을 인정받음
(실제 수업 진행하지 않음)

-사회복지현장**실습세미나**는 실습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피드백 진행(실제 수업을 진행함, 상대평가)

5.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이수과목과 학과 졸업학점을 잘 숙지
하시어, 학사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